



국 세 청

한국세무사회		결재	현
접수일시	2017-08-29	지시사항	
접수번호	1401		
주무과			
담당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 개선 안내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청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인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01.7.23.이전 상법상 규제로 인해 법인설립시 부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간편하게 실명전환 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14. 6.23. 제도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규모가 성장한 점과 신청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17.5.1.부터는 주식가액 기준(실명전환 주식가액 30억원 미만)을 삭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개선된 제도 내용과 관련 규정을 보내드리니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가업승계에 불편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인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 개정 내용 및 관련 규정 1부. 끝.

국 세 청

수신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국세조사관 최봉수 행정사무관 김종성 자본거래관리 전결 2017. 8. 21.
과장 윤종건

협조자

시행 자본거래관리과-408 (2017. 8. 21.) 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http://www.nts.go.kr>

전화번호 044 204 3495 팩스번호 050 31101847 / bong0048@nts.go.kr / 대국민 공개